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평택해양대학교 설립 근거 마련〉

■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64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병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13.
3. 회부연월일 : 2025.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시의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평택시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평택시는 향후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으며, 평택시를 거점으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택시에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평택시의 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해양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평택

시가 해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평택해양대학교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관을 변경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평택해양대학교를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 나. 평택해양대학교의 임원은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고, 총장은 평택해양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평택해양대학교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평택해양대학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라. 평택해양대학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 마. 평택해양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의 해양 분야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기술개발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32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평택해양대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의 신설(안 제43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장 평택해양대학교 설립·운영</u>
<u><신 설></u>	<u>제32조(설립 목적) 국가의 해양 분야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기술개발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한다.</u>
<u><신 설></u>	<u>제43조(국·공유재산의 양여 등)</u> <u>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u>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평택
해양대의 설립·운영 등을 위
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국
유문화유산은 제외한다.

② 국가는 평택해양대의 설립
·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
고 평택해양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
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
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평
택해양대의 계약으로 정한다.

- 평택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음. 평택시를 거점으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평택시에 국립학교인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평택시의 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해양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평택시가 해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 국립 해양대학교의 법령상 근거와의 차이, 재정적 부담, 국·공유재산의 양여 특례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¹⁾는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는 학교의 이전·증설에 대하여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26조는 학교의 신설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학교의 <u>이전</u>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학교의 <u>신설·이전</u> 등에 관한 특례) ①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 유발시설중 학교를 평택시에 <u>이전하거나 증설</u> 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 ----- ----- ----- <u>신설·이전하거나 증설</u>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u>이전이나 증설</u> 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u>신설·이전이나 증설</u> ----- -----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를 개정하기 위하여는 국토교통부 등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기존 국립 해양대학교으로 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가 있음.

이들 국립 해양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18조²⁾와 제19조³⁾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에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국립 평택해양대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설립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를 위하여는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의 협의를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셋째, 개정안 제43조는 국·공유재산 양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양여를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⁵⁾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선행될 필요

2) 제18조(학교의 명칭)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3)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4) 참고자료 1. 국립학교 설치령 참조

5)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가 있고, 국유재산의 양여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55조⁶⁾와 관련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넷째,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신설에는 학교 및 기숙사 신축, 실습선 마련⁷⁾,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⁸⁾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재원마련을 위한 협

-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 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실습선의 경우, 규모에 따라 제작비용에 차이가 있는데, 2019년 제작된 한국해양대학교의 실습선 한나라호의 경우, 제작비용이 752억 5,600만원이 소요되었음
 - 8)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평택시에 국립해양대학교를 설립할 경우, 학교 및 기숙사 건립, 실습선 제작,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학교 및 기숙사 규모, 실습선 규모,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 취득의 어려움으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

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동법⁹⁾이 2026.12.31.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인 점,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평택시’에만 국립대학교를 신설하는 특례를 적용하게 될 경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타 법률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내 대학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평택시’만 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이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특례로 판단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라는 어려운 현실과 대규모 재정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평택 지역 해양대학의 신설은 기존 해양대학(국립목포해양대, 국립한국해양대)과의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및 정책 혼란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임.¹⁰⁾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양여가 소유권을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

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부칙 ② (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0) 참고자료 2. 기존 해양대학교의 입장

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에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인 평택해양대에 공유재산 양여 특례를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여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국·공유재산 양여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성, 재정 확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자료

1.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3조 (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제3조 관련)

1. 대학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	국립안동대학교	경상북도
강원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북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국립공주대학교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국립창원대학교	경상남도
국립군산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상북도	충북대학교	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
국립목포대학교	전라남도	한경국립대학교	경기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전라남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청북도·경기도
국립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한국체육대학교	서울특별시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특별시	국립한밭대학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국립순천대학교	전라남도		

2. 기존 해양대학교의 입장

학교	검토의견
국립 목포 해양대	<신중검토 필요> · 평택 지역 해양대학의 신설은 기존 해양 특성화대학(한국해양대, 목포 해양대)과의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및 정책 혼란 가중 우려 · 현재 설치·운영 중인 기존 대학의 지원을 늘려 기배출된 해양 인재가 수도권 지역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병행이 중요
국립 한국 해양대	<삭제> · 기존 해양 특성화대학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통해 수도권 캠퍼스 형태로 교육 및 연구기능 확충